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857

발의연월일: 2022. 12. 9.

발 의 자:이성만·권인숙·김교흥

김태년 · 김홍걸 · 박찬대

신동근・유동수・윤재갑

정일영 · 정태호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하여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전화 시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의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 1 |
|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 |
|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 |
| 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 |
|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 |
| 것을 말한다. |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
| | <u>는 행위로서 우편·전화·팩</u> |
| | 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 |
| |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
| |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 |
| | 하여 물건등의 도달을 시 |
| | 도하는 행위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